



금융감독원

보 도 참 고



금융은 통통하게 소비자



보도	2022.12.15.(목) 조간	배포	2022.12.14.(수)		
담당부서	공시심사실 공시심사3팀	책임자	실 장	장창호	(02-3145-8420)
		담당자	팀 장 선임조사역	안종호 황선욱	(02-3145-8463) (02-3145-8465)
신문 등 언론매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 투자권유 주의 - 증권신고서 등 공시여부 및 사업실체를 꼼꼼히 따져보고 투자하세요 -					

■ 소비자경보 2022-18호

등급	주의	경고	위험
대상	금융소비자 일반		

소비자경보 주요 내용

- ◆ 최근 신문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‘비상장주식’의 투자를 공공연히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되어 소비자경보 발령
 - 비상장주식은 일반인이 검증하기 어려운 신기술 개발, 해외투자 유치 등의 테마와 상장시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를 유도하지만 공시자료가 없고* 실체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투자자 주의 필요
- * 신문광고,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매수를 권유할 경우,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
비상장주식 투자시 소비자 유의사항

- 1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공시 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일 수 있습니다.
- 2 공개된 투자정보가 허위·과장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.
- 3 회사와 사업의 실체에 대해 투자자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.
- 4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무인가업자를 통한 거래는 피해자 구제가 어렵습니다.
- 5 유통거래량이 적어 적정 가치평가가 어렵고 가격 변동성이 큼니다.
- 6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- 7 근거없는 허위·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.

※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는 처벌대상임.

I.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

- 최근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신문광고 및 SNS 등을 이용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'비상장주식'의 투자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견됨
 - '20년 이후 공모주 열풍으로 신규 투자자들이 다수 유입되며, 비상장주식 투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경계가 완화된 상황
 - 이러한 환경 속에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신문광고, 문자 및 SNS 등의 친숙한 채널을 활용하여,
 - 검증되지 않은 영업실적, 자금유치·상장 계획 등 허위·과장된 사업 내용을 제시하거나, 고수의 보장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투자를 권유
- ➡ 공시의무를 위반한 비상장주식 투자는 공개된 정보가 부족하고, 감시장치가 없어 가격조작 등으로 개인투자자의 피해가 야기되기 쉬우므로 피해 예방을 위해 투자사례와 소비자 행동요령을 안내

II. 비상장주식 주요 투자사례

- ① (검증이 어려운 호재) 비상장 A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'분쇄기를 이용한 실리콘음극재 양산에 성공했다'면서 수백만주를 발행한 후, 무인가업자를 통해 주당 12천원에 유통 ⇒ 유증 후 2년째 매출없음
- ② (해외 상장예정 홍보) 비상장 B사는 증권신고서 제출없이 '구글보다 빠른 SNS 검색기술을 개발했다'면서 '나스닥 상장을 진행'한다고 홍보하며 주당 15만원에 유증 진행 ⇒ 대표 구속 및 주주소송 中
- ③ (신문을 통한 투자광고) 비상장 C사가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의 주주 D씨는 신문광고를 통해 '회사의 상장회사 합병 및 해외 투자유치가 확정'이라며, 보유주식의 매도를 위한 청약을 권고 ⇒ 법 위반소지 확인 후, 청약절차 중단

Ⅲ. 비상장주식 투자시, 소비자 유의사항

①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**공시의무를 위반한 투자권유**일 수 있습니다.

- 비상장회사나 주주가 다수의 일반인을 대상으로 신주의 발행이나, 기존주식 매수를 권유한다면 사전에 증권신고서 등의 공시의무가 부여되므로 DART를 통해 신고서가 **조회**되지 않으면 투자에 유의

※ <붙임> '비상장법인의 증권 모집·매출시 공시의무' 참고

② 공개된 **투자정보**가 **허위·과장**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.

- 비상장회사는 재무현황이나 사업구조, 투자위험 등에 대한 정보가 **충분히** 제공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를 수 있으며, **과장 광고**로 인해 투자자의 오인을 유발할 수 있음에 유의

③ **회사와 사업의 실체**에 대해 투자자가 **별도로 확인**해야 합니다.

- 회사의 유무형 자산이나 기술력, 영업권에 대한 **사실관계 확인**이 어렵고 투자자가 스스로 **회사의 실체**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

④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닌 **무인가업자**를 통한 거래는 **피해자 구제**가 어렵습니다.

- 무인가업자와 거래로 인한 피해는 우리원 분쟁조정 대상이 되지 않고, 보상도 불리하므로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할 필요

⑤ 유통거래량이 적어 **적정 가치평가**가 어렵고 **가격 변동성**이 큼니다.

- 비상장주식은 거래량이 적은 경우가 많아, 시가산정 등 **적정한 가치평가**가 어렵고, **가격 변동성**이 매우 클 수 있음에 유의

⑥ 시장에 대한 감시장치가 없어 **가격조작** 등에 **노출**될 가능성이 있습니다.

- 비상장주식이 거래되는 중개시스템의 시장감시 기능이 상장증권시장 대비 **미흡**하여 **가격조작** 등에 **노출**될 가능성에 유의

7] 근거없는 허위·과장된 투자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대상입니다.

- 주식의 매매 거래 등과 관련하여 허위·과장된 내용의 풍문 등을 유포하는 경우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.

불법행위 대응 관련

◆ 금융감독원은 비상장주식 거래 관련 “공시위반” 및 “불공정거래” 등의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공시조사 및 불공정거래 조사를 통한 위법사실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제재조치를 통해 엄정 대응 예정

- 비상장회사 또는 무인가업자* 등의 공시의무 위반 또는 불공정거래 행위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(국번없이 1332)에 상담 또는 제보 가능

* 금융소비자 정보포털(fine.fss.or.kr) → “제도권 금융회사 조회”를 통해 확인 가능

- 아울러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및 불공정거래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함께 안내·홍보·교육도 지속할 예정

<상담 또는 제보방법>

- ▶ (유 선) 금융감독원 콜센터(☎ 1332) - 4번 - 3번
- ▶ (온라인)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
민원·신고 ▷ 불법금융신고센터 ▷ 증권불공정거래신고 ▷ 신청하기
- ▶ (방 문) 금융감독원 본원 및 지방지원

<붙임>

비상장법인의 증권 모집·매출시 공시의무

◆ 신문광고, 문자 및 SNS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주식 청약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공시의무가 존재

□ 50인* 이상을 대상으로 신규발행 증권 또는 기발행 증권의 취득을 권유할 경우 증권신고서 또는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해야 함

* 전문가·연고자는 제외되며 과거 6개월 이내 같은 종류의 증권에 대해 모집·매출에 의하지 않고 청약의 권유를 받은 자를 합산

○ 실제 청약자가 아니라 청약권유를 받은 자를 기준으로 하므로 인터넷 등 불특정다수가 접근 가능한 매체를 사용할 경우 공시의무가 발생

◆ 모집·매출가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,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

□ 당해 모집·매출가액과 과거 1년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모집·매출한 가액의 합계액이 각각 10억원 이상일 경우 증권신고서를, 10억원 미만일 경우 소액공모공시서류 등을 제출

○ 증권신고서 제출대상(모집·매출가액 10억원 이상)인 경우 청약을 권유할 때에는 투자설명서를 교부하여 투자자가 증권 및 발행인에 관한 내용을 충분히 파악한 후 의사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함

○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대상인 경우 발행인의 재무상태, 영업실적 및 공모의 개요 등 최소한의 공시의무*를 이행

- * ① 소액공모 개시 3일 전에 감사보고서 및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
② 투자매매·중개업자 등과 청약증거금 관리계약 체결
③ 소액공모 종료 후 지체없이 실적보고서 제출
④ 매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회계감사보고서를 포함한 결산서류 제출

※ 상세한 공시제도 설명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게시 자료를 참고 :
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 → 「업무자료」 → 「공시업무」 → 「기업공시제도 일반」 또는 「공시유의사항」